

무주택 여부 및 무주택기간 가점 관련 안내

□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

- 한국부동산원 ‘청약홈’ 접속 → 청약자격확인 → 주택소유확인
- 세대구성원* 모두 무주택이어야 신청대상이므로 전원 확인 필요
 - * 신청자, 배우자,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,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 - ** 배우자의 전혼 직계비속은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
- 무주택 판단기준 및 청약제도 문의 : 국토부 민원 콜센터 (1599-0001)
청약홈 (1644-7445)

□ 무주택기간(최근 5년) 가점

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, 최근 5년간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일 경우
⇒ 필수 업로드 서류 : **무주택기간 확인 양식(서식1)**
- 무주택 여부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
⇒ 무주택기간 확인 양식(서식1)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

증빙서류(예시)	발급방법	용도
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(전국단위, 5년)	· 구청, 행정복지센터 · 위택스(wetax)	재산세(주택) 확인
건축물관리대장	· 구청, 행정복지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24 홈페이지	공부상 용도, 거래일자 등 확인용
건물등기사항증명서	· 무인발급기, 등기소, 대법원 인 터넷등기소 홈페이지	